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6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최보윤·서미화·송재봉

이병진 · 김문수 · 김소희

김선교 • 서천호 • 윤종오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성별로"를 "성별 및 장애인 해당 여부로"로, "성별통계"를 "통계"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성별구분"을 "성별구분 및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
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영) ①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	
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	
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	3
우 <u>성별로</u> 구분한 <u>성별통계</u>	<u>성별 및 장애인 해당</u>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u>여부로통계</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	
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	
항의 <u>성별구분</u> 등 대통령령으	<u>성별구분 및 장애인 해</u>
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 여부 구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	
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	
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